

「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5월 1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2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6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축산과 김영기)

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「양곡관리법」 제16조(가공업의 허가 등) 규정에 따라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1. 6.10 평창군 조례 제680호로 제정되었으나 1994. 1. 5 해당법령 전부 개정으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는 「양곡관리법」에 따라 규모이하 제분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10일 제정된 조례임.

- 그러나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